

노동조합소식

☎ 868-8133 Fax. 868-8136
연제구 연산동 739-24 그린빌딩6층



www.penlu.or.kr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발행인 : 이 영 호
편집인 : 장 성 호

2007년도 사업계획

지난 한해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 및 조직력 확대, 그리고 노동조합 기반마련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06 공무원 단체교섭 요구, 교무행정 업무담당자 교무실 배치 반대, 공무원 정년 단일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주관 및 참가, 성과상여금 "0%"폐지, 기능직공무원상위직급정원 확대 등 현실적으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여기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일구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공무원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경쟁력을 드높이는 데 조합의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 2007년도 주요사업 >

- 첫 째, 교육감과의 **단체협약 체결**
- 둘 째, 지방공무원의 유대강화를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셋 째, 공무원의 역량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부산교육아카데미 설치 운영**
- 넷 째, 노동조합의 장기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팀 운영**
- 다섯째, 합리적인 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 여섯째,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평등한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강화
- 일곱째, 기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등 입니다.

이제 공무원사회도 어느 사기업에 못지 않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민복으로써의 역할과 책임도 더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함께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작으나마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우리 부산 교육청공무원노조도 보다 활성화되고 친화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노력합시다!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시작하며

2007년 3월 1일 제5대 민선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임기 시작 !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사상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2.14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가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부산시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 속에 치러져 설동근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하지만 투표율은 역대 시·도 단위선거 가운데 최저를 기록해 직선제 선거에 대한 문제점과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차지의 내실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그리 녹녹치 만은 않다. 공교육의 불신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육 부채의 해결 등 각계 각층의 요구가 벌써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첫 민선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선 교육감은 이번 선거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부산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국 1등이라는 대외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뜻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역량을 발휘하여 미래 지향적인 부산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교육청 조직을 보다 더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시민과 교육수요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청으로 거듭 나아 함을 감히 충언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님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본이 되고,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조합과 협력과 동반자로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부민노와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협의중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법과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자격 없는 노조임원들의 횡포에 조합원들만 멍든다!

황당!! 부산광역시교육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부민노')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 원칙적으로 무효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06.6.14 ~6.27까지 우편투표로 실시된 '부민노' 조합임원 선거결과 재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득표 결과만으로 임원 선출을 결의하였고, 이 결의를 바탕으로 2006. 7. 1.부터 노동조합대표를 비롯한 임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민노가 지난 2006.6.27. 실시 한 대표 및 임원선거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됨은 물론 부민노의 규약에도 위배됨에 따라, 지난 2007.01.23.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으로 인정 된 후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무효화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실증법을 위반한 조합임원 무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그동안 부민노의 자격 없는 집행부는 우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사건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조합원들의 징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 함으로써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발목을 잡아 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법과 규약을 위반하여 자격과 권한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로 혹은 임원으로 행세를 해오다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기에 우리 노동조합 뿐만아니라 부민노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공무원을 우롱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의 사태는 우리 노동조합으로 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드러난 부민노 집행부의 부도덕성은 두고라도, 새롭게 구성 될 "부민노"의 집행부가 과연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은 하였는지, 어디까지가 조합원들의 뜻인지를 고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2006.7.1.부터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 즉, 대의원 구성 및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과 규약변경 등 일련의 노조활동이 대표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집행부가 행한 것들로써 그 정당성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리는 없겠지만 만약 새로운 집행부가 다시 이들로 구성된다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더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고사하고, 아직도 대표 및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위 무자격자들로부터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을 뿐만아니라, 쉬쉬하며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노심초사 입단속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해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우리노동조합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뻔한 사실을 그렇지 않다고 버티는 소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는 무모함을 보면서 실로 그 작태에 실소와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노동조합은 무엇으로 지탱할 수 있는가? 조합비, 정보, 시간, 조직, 지식, 여론을 흔히들 노동조합운영의 주요 요소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우리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노동조합 관계법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주성과 자주성이다. 이 두가지는 철저히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맡겨 조합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자는 취지가 강하다.

그런데, 이번의 사태는 민주성을 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그 진의를 의심케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와 임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들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이 정해지고, 이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실질적인 주역들이 아닌가? 대표를 보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갖

는 명실 공히 전체 조합원들의 대표자이다. 조합원들이 승인해준 단체교섭의 내용을 달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다.

그러한 자리에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라고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였다면, 이는 스스로의 욕심에 사로잡혀 법과 규약을 알면서도 조합원들이 알지 못함을 볼모로 한 고의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조합의 근간인 대표자격을 갖기 위한 기본요건을 몰랐던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인 자질을 결한 것에 다름없어 과연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분명, "부민노"의 조합원을 우롱한 잘못, "부교노"의 단체교섭을 지연시킨 잘못, 여타 지방공무원의 기대를 저버린 잘못 등등에 대하여 씻지 못할 오점과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로서 마땅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이 무엇일까? 다시, 대표나 임원선거에 나가 법적요건을 갖추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오만과 독선은 아닐까? 과연 그것이 지성있는 자로써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인내의 끝은 달다 !!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2007.02.13.자로 "부민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자격이 있는 대표자 및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우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민노는 2007.02.21.자 보도자료를 통해

◆ 부산지방노동청 진정서 제출에 대한 설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006년 12월초 부산지방노동청에 부민노 임원선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부민노에 시정공문을 보내왔으므로 이에 부민노에서는 법에 위배됨이 없이 합법적으로 임원선출을 하였음을 통보 할 것이며, 따라서 부민노에 대한 음해와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현혹하고 있다. 이는 모든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넘어,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 대표성도 자격도 없는 몇몇 사람들의 장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격이 없는 대표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부민노"와 "부교노"의 조합원들을 위해... 그 결과는 이들에게 개선장군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 될 텐데도 그렇게 하여야 할까? 혹여 이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여 조합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는 않을까...

진작부터 이를 깨칠 주체는 우리 노동조합이 아니었다. 그 주체는 다름 아닌 부민노 조합원들이었다. 그러나 볼 수 없고 들리지 않는 다음에야 어찌 할 도리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제는 드러나지 않았는가? 비록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진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그들의 오만을 알면서도, 스스로 정한 원칙과 규정이 무시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다면 "부민노"는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지...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 것이 뻔 한데도 그렇게 밖에 되지 않을 공산이 다분히 있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두고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움을 가눌 길이 없다.

이 황당한 사태가 이대로 유아무야 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묻고 싶다.. 이렇게.. "부민노"조합원 여러분 당신들은 진정 자존심도 없습니까? 라고...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하루 빨리 이번사태를 정상화하여 자격이 있는 대표와 임원들로 구성된 집행부가 들어서 교육감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에 나설길 바랄 뿐이다. !!!!!

이제 다시 뛰어 보자.!!

의인은 항상 시대의 흐름에 부화뇌동 않고 초연하며, 바른 소리를 내어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다. 조직을 편 가르기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여 실제적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에 속으면 안 된다. 올바른 노동조합은 기틀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하며 안과 밖, 말과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노동조합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나, 너 할것없이 공무원이라면 누구나가 눈을 부릅뜨고 옥과 석을 가려야 한다.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모름지기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요구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며, 정확한 의중을 읽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결부시키고, 조합원을 볼모로 아(我상)와 피(彼대)를 편 가르기를 하여서는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 어차피 공존하여야 한다면 상생의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단체교섭 단일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번 소식지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부민노'에서 단체교섭안과는 무관한 조합내부 활동을 문제삼아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부민노"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의 임원선거 결과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음(2007.02.01)으로 인해 "부민노"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한 교섭창구 단일화 위원의 대표성 결여로 인해 더 이상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2007.02.13.자로 "부민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자격이 있는 대표자 및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우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자격없는자들로 부터 자기들이 대표와 임원이라는 메아리만 들려올 뿐, 전혀 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오만방자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기다릴 것이다. 부민노가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하는 그 날까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요약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 결 서

사 건 2007 결의1 부산광역시교육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부산지방노동청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공무원노동조합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신 청 취 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민노는 2006. 6. 27. 공고한 제1기 노동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의 임원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조합원의 출석으로 의결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이의 시정을 명령하고자 의결을 구하였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부민노는 제1기 선출직 임원선거를 위하여 2006. 6.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입후보등록기간을 거쳐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같은 달 27. 재적조합원 965명 중 373명(재적조합원 대비 38.65%)이 투표하여 동반으로 출마한 노동조합위원장과 사무총장은 361표, 수석부위원장은 363표를 각 득표하였다는 공고를 하였다.

나. 부교노(위원장 이영호)는 2006. 8. 26.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2006년도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하였고, 부민노에서도 같은 해 9. 4. 단체교섭에 참가 하게 됨에 따라 동 교육감은 같은 달 5일. 양 노조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위원 선임을 요구하는 공고를 하였다.

다. 2006. 12. 12. 부민노는 상기가'항과 관련 부민노의 같은 해 6. 27. 임원선거 결과에 따른 공고문에 의하면 출석조합원이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며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요구문을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라. 2006. 12. 27. 부민노위원장은 노동조합 운영경험 및 관계법령과 노조규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같은 해 6. 중 실시한 제1기 임원선거의 출석조합원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38.65%)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마. 부산지방노동청장은 부민노가 2006. 6. 27. 공고한 제1기 임원선거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조합원의 출석으로 의결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를 시정명령하고자 의결요청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이 사건 의결요청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시 제1.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과 같이 노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 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인 부민노는 2006. 6.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실시한 제1기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위원장, 사무총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우편투표를 실시하였는바, 총회에 갈음할 조합원 임원선거 투표를 개별 우편발송 방식을 취한 경우에 있어서 그 투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 선출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적조합원 965명 중 373명이 투표하여 재적조합원 대비 38.65%의 출석조합원만으로 의결하였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부민노의 결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구하는 부산지방노동청장의 의결요청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